

이천시 이·통·반 운영 규칙

소관부서 : 자치교육과

제정 1996· 3· 1 규칙 제 69호
전부개정 2023· 9· 8 규칙 제757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이·통·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반장의 위·해촉) 반장 및 명예 반장의 위·해촉시는 위·해촉장을 교부하고 위·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위촉의 경우에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3조(반상회)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.

1.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
2.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3.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
4.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
5. 그 밖에 해당 이·통·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운영세칙) 「이천시 이·통·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이·통·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·면·동장이 정한다.

부칙 <2023· 9· 8 규칙 제757호 전부개정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